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신한금융지주

2. 제재조치일 : 2017. 9. 4.

3. 제재조치 내용

제재대상	내용
기 관	경영유의사항 2건, 개선사항 1건

※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이사회 구성 관련 다양성 및 전문성 미흡

○ 이사회는 전체 주주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그룹의 중요 성장전략 부문 등 제반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충분히 논의·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, 특히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경우 후보군 선정부터 전문분야별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에도

신한지주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사외이사 선임 및 후보군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,

특히 사외이사 중 재일동포 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전문분야가 아닌 출신지역별로 후보군을 관리하는 등 전문성 제고 노력이 부족하므로

앞으로 이사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로 더욱 적정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 및 사외이사 선임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한편, 재일동포 출신을 포함한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해서는 전문분야별 관리 및 자격요건 검증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(2) 고문제도 운영상 관리 및 평가절차 미흡

○ 신한지주는 2017. 3. 23.「고문운영규정」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고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,

동 규정에 자문실적 관리절차 및 평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고문활동의 수행 내용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

관련 내규를 보완하여 고문에 대한 자문실적 관리절차를 마련하는 한편, 적정성 평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고문제도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

나. 개선사항

(1)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 운영절차 등 개선

○ 「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규정」에 따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는 자회사등의 경영진 후보에 대한 심의 및 추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,

자회사등의 대표이사 후보가 아닌 경영진 후보에 대해서는 추천방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회사등의 자율적 경영정책 및 내부통제 등 수행이 위축될 소지가 있으므로

관련 내규에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가 아닌 경영진 후보에 대해서도 그 추천방법 및 추천절차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등 심의 및 추천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